

형사사건 보도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측 정보를 균형 있게 다뤄야

飯田正剛

변호사

이 글은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연구' 1997년 2월호에 실린 飯田正剛 변호사의 “對話なしに批判も理解もない”를 번역한 것으로, 도쿄변호사회의 보도피해대책 매뉴얼의 발간을 소개한

글이다.....편집자 주

도쿄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 인권과 보도에 관한 부회(이하 '당부회'로 함)는 1990년 2월 '취재 당하는 쪽의 권리'를 발표한 데 이어 1996년 10월 '보도피해대책 매뉴얼; 다져가는 보도와 인권'을 간행했다.

피의자측 정보의 부족이 우선 문제

우리는 곧바로 '매뉴얼' 작성에 들어 가지 않고 우선 보도기관과의 토론을 계속해서 갖기로 했다. 첫째로 보도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실정을 근거로 인권과 보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고, 둘째로 기자(보도기관)와 변호인(회)과의 토론(비판 이해)에 의해 보다 양질의 보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의 기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간담을 시작으로 90년부터는 경시청의 기자클럽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을 실시했다. 이 토론과정에서 기자들이 지적하고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던 문제점은 형사절차(특히 수사단계)에 있어 보도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의 편재였다. 즉 수사기관측의 입장에 선 수사기관측의 일방적 정보가 대부분이었으며 피의자·피고인측의 정보는 부족하다는 것.

이러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범죄보도' 개혁을 위해 (형사절차의 적정화·형사변호활동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형사절차에 있어 보도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매뉴얼'을 작성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죄추정'의 법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보도기관이 체포단계에서 대부분 '유죄추정'으로 보는 자세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보도를 일삼는 현상을 변혁시키고 또한 '언론사의 당번변호사제'를 확대·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보도기관에 대해 과감한 대응을 한 변호활동의 모범을 배우면서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실천적 의논을 모아 보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보도에 대응할 것

매뉴얼을 작성 하면서 새삼 자각했던 것은 형사변호의 활동은 보도기관에 대한 대응까지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 종래의 형사변호에 대한 사고는 형사변호인의 활동을 수사기관과의 관계(대응), 공판정에서의 법관 검사와의 관계(대응)에 한정해 왔다. 형사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경찰을 상대로 기소유예나 무죄 집행유예를 얻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 또한 '흉악한' 형사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검찰만이 아니라 보도기관까지도 상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그의 가족)에 대한 보도가 인권침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는데, 형사변호인이 이러한 보도피해를 간과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보도피해, 즉 수사기관의 일방적 정보에 근거한 보도를 방지하는 일은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

91년의 이른바 '토리카부토 사건'의 수사변호활동에서 담당변호인들이 피의자와의 접견을 해가던 중 보도기관담당변호인을 따로 두어 정기적으로 피의자 측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수사단계의 보도까지도)에 대한 억제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형사변호의 활동을 보도기관에 대한 대응에까지 넓힐 경우 보도기관의 협력과 이해가 극히 중요하다. 형사변호인이 보도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없거나 보도기관의 협력, 이해를 얻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보도기관의 취재를 받더라도 거의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자와 변호인의 상호비판과 이해를

나는 '신문연구' 94년 4월호에서 본 '매뉴얼'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도기관에 대한 몇 가지 요망을 기술한 바 있는데 그 개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사의 당번변호사는 피의자와 면회(접견)하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단히 미묘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어야 한다.

둘째, 언론사와 대응할 때 걸림돌이 될 문제점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언론사와의 대응으로 인한 '업무지장(성가심)론'이나 '매스미디어 불신론'이 본질이므로 관계변호인의 부담·불신을 제거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주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하는 일, '심야와 새벽취재'를 하는 일 등은 가급적 억제할 것이며 가령 변호인을 취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자택은 피하고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적 신뢰관계의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즉 ①일상적인 접촉·신의의 이행, ②'오프더 레코드'의 약속이행, ③익명보도, 초상 불게재 요청의 존중, ④변호인의 양해가 있기까지의 게재보류, ⑤변호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일 등은 최소한의 신의라고 하겠다. 또 변호인은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언론사(기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종'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 기자회견을 하여 '넓게 알게' 보도되는 것 보다는 '좁고 크게' 보도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인의 이러한 의도(요망)에는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91년 몇몇 변호인들과 함께 수사변호활동을 한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한 특정의 전국지 기자에 대해 입증을 충분히 한 후에 '억울한 죄목'으로 체포·구류되었다는 사실을 호소했더니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어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로 작용,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일이 있었다.

넷째,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문제의식을 가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언론사는 수사기관의 '홍보계' 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기자) 중에는 수사기관측의 관점에 서는 자가 아직도 존재한다.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눈을 갖지 못한 기자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지금도 이상과 같은 요망을 갖고 있는데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기자들이 변호인(특히 수사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의 문을 두드려 주었으면 하는 일이다.

대화없이 비판도 이해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체포 구류된 피의자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정보뿐 아니라 피의자 측의 정보가 '반대취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피의자의 변호인을 찾아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변호인과 접촉한 기자들이 수사기관과는 다른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보는 자세를 배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